
멕시코 취업비자

= Mexico K-Move 센터, 2018.4.27 =

1. 취업비자 종류 및 발급현황

□ 개요

2011 년 5 월 25 일 신이민법(Ley de Migración)이 제정되고 2012 년 9 월 28 일 신이민법 시행규칙(Reglamento) 제정되어 2012 년 11 월 9 일 전격적으로 발효되면서 기존 비자종류 및 발급절차에 커다란 변화가 이루어졌다. 가장 큰 변화는 비자종류가 단순화 된 것이며 기존에 관광비자 자격으로 멕시코에 입국하여 학생비자, 취업비자 혹은 동반가족비자 등으로 자유롭게 비자성격을 변경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해당국 멕시코영사과에서 인터뷰를 통해 사전승인비자를 취득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겼다. 사전승인비자제도로 수속절차가 복잡해 지니 당연히 외국인이 멕시코 비자를 취득하는데 예전에 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구이민법에서는 비자종류를 FM3(비이민비자), FM2(이민비자) 그리고 INMIGRADO(영주권) 등으로 나뉘고 세부적으로 20 여개의 성격의 비자로 분류되었던 것이 현재 신이민법 및 시행규칙에 의거 다음 3 종류의 비자로 크게 분류된다.

1) Visitante 방문비자

관광, 여행, 휴가, 방문, 단순 비즈니스, 회의참석, 컨퍼런스 및 세미나 참석목적으로 방문할 경우 최대 6개월(18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통상 일을 할 수 없는 비자로 분류된다. 한국본사에서 파견된 180일 이하 단기파견 주재원이나 엔지니어는 멕시코에서 일을 한다하여도 단기체류자로 분류되어 방문비자에 속한다.

2) Residente Temporal 임시체류비자

180일 이상 4년이하 장기 비즈니스, 엔지니어, 주재원, 교환학생, 유학생, 어학연수생, 동반가족, 투자자, 멕시코현지업체에 인턴채용 및 정직원으로 고용된 사람들이 이 비자 분류에 속한다. 장기 임시체류비자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멕시코영사관에 해당 비자발급 절차를 거쳐 임시비자를 받고 멕시코에 입국해야 한다. 멕시코 현지업체의 초청으로 멕시코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취업비자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는 멕시코 해당 업체가 멕시코 이민청에 초청비자 신청을 해서 영사인터뷰승인번호를 받아 인터뷰를 진행해야 한다.

3) Residente Permanente 영주권

멕시코에서 영구히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영주권으로 기존 INMIGRADO 영주권으로 볼 수 있다. 현재 멕시코는 합법적으로 4년 이상 비자를 가지고 체류할 경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구이민법에 의거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10년 걸리던 기간이 상당히 단축되었다.

□ 취업비자의 종류

한국청년이 멕시코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일하고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취업/워킹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취득요건은 채용을 희망하는 멕시코회사가 해당 외국인의 워킹비자초청장을 발급하여 이민청에 비자신청을 해야한다. 이때 채용회사는 이민청에 고용주등록을 마친 이후 이민청에 초청자의 여권사본을 제출하여 워킹비자 신청을 한다. 취업비자를 취득하고자 하는 한국청년은 멕시코에 범죄전과기록이나 불법체류나 추방된 전적만 없으면 큰 어려움 없이 워킹비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 취업비자 발급현황

멕시코 이민청 관계자가 제공한 최근 3년 통계자료를 확인 한 결과 대한민국 국적자가 멕시코 이민청을 통해 워킹비자 승인을 받은 건 수는 다음과 같다.

해당년도	2015	2016	2017 5월 말 기준
워킹비자 승인 건	2,838	3,223	2,801

상기 자료를 보듯이 계속적으로 한국국적자의 멕시코 취업비자 신청 및 승인이 년도별로 확연히 늘고 있는 추세이다.

<통계자료 제공자: Lic. Alejandro Austria de la Vega, Director de Vinculación con

el Servicio Exterior de Instituto Nacional de Migración, 2018년 3월>

2. 취업비자 신청 및 취득

□ 발급기관

취업비자 신청접수를 받고 최종 카드형 비자를 발급하는 기관은 멕시코 내무부 산하 이민청이다. 해당기관 공식 홈페이지는 <https://gob.mx/inm> 이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멕시코시티와 몬테레이 이민청의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멕시코시티이민청>

- 주소: Av. Ejército Nacional 862, Col. Los Morales Sección Palmas, Delegación Miguel Hidalgo, C.P. 11540, México Ciudad de México.
- 업무시간: 월~금요일 09:00 a 13:00 hrs.
- 담당자: Victor Manuel Vargas Ramírez
- 전화번호: (55) 5387-2400
- 이메일: informesdf@inami.gob.mx

<몬테레이 누에보레온주 이민청>

- 주소: Av. Lázaro Cárdenas No. 1817 Fracc. Jardín de las Torres 1er. Sector C.P. 64754, Monterrey, N.L.
- 업무시간: 월~금요일 09:00 a 13:00 hrs.
- 담당자: Luis Gerardo Islas González
- 전화번호: 01 (818) 486 15 74 al 77 // 01 (818) 486 15 87 al 89

◦이메일: lislas@inami.gob.mx

□ 취업비자 신청 및 발급절차

멕시코시티 이민청 기준으로 취업비자 신청 및 발급절차는 아래와 같다.

순서	절차	제출기관명/국가	예상 소요기간 (멕시코시티 이민청 기준)	부가설명
1	고용주등록증 신청 (Constancia de Inscripción de Empleador)	멕시코이민청(INM)	3~4주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회사가 이민청에 등록하여 등록증을 발급받는다
2	워킹비자 신청 (Oferta del Empleo)	멕시코이민청(INM)	3~4 주	채용을 희망하는 외국인의 여권사본이 제출된다
3	영사인터뷰승인번호(NUT) 발급 (Autorización de Visa para Permiso de Entrevista Consular)	멕시코이민청(INM)		-영사인터뷰승인서가 발급되어 통지받은 날로부터 워킹데이 30일 내에 멕시코영사인터뷰를 하고 워킹비자를 받아야 한다
4	영사인터뷰 및 임시비자 발급 (Entrevista Consular y	전세계 멕시코 재외 영사관 (SER)	2~10 일	-영사관 마다 업무량에 따라 인터뷰 예약 및 비자 발급일이 상이

	Emisión de visa provisional)			<p>하다</p> <p>-주한멕시코대사관 영사과에서 인터뷰 할 경우 인터뷰 이후 10 일 이내 비자 발급한다</p> <p>-임시비자발급 일로부터 180 일 이내 멕시코 입국 후 외국인거주자 등록하여 카드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p>
5	멕시코 입국 후 카드비자 교환 (Canje de Documento Migratorio)	멕시코이민청(INM)	5일	-멕시코 입국 후 외국인등록을 하고 카드형태의 비자를 발급한다

· 취업비자 신청 시 각 절차별 필요서류

1) 고용주등록증 신청

외국인을 채용하고자하는 모든 멕시코 회사는 멕시코 이민청에 회사/고용주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민청에 등록이 된 회사만 외국인 취업비자를 신청 할 자격을 갖는다. 고용주등록관련 준비서류 및 소요기간은 다음과 같다.

◦ 준비서류:

- 등기된 회사 설립 정관 원본
- 등기된 회사 대표자 공증 위임장 원본
- 회사 주소지 증명용 최근 공과금 고지서 원본
- 국세청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서(R-1) 및 사업자등록증(Constancia/RFC)
- 최근 3개월 세금신고(Declaración Mensual) 자료
- 신규회사가 아닌 경우 전년도 세금결산신고(Declaración Anual) 자료
- 이민청 제공 등록 신청서
- 회사대표 공식 신분증 원본
- 고용리스트, 등등...
- 소요기간: 신청 접수 후 고용주등록증 발급되는데 통상 3~4주 정도 소요 (멕시코시티 이민청 기준)
- 실비: 이민청 납부 수수료/인지세는 무료

2) 취업비자 신청

회사가 이민청으로 부터 고용주등록증을 발급 받은 후 외국인 워킹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워킹비자 신청관련 준비서류 및 소요기간은 다음과 같다.

- 준비서류:
 - 이민청에 등록된 고용주등록증 사본
 - 초청하고자하는 외국인 여권사본
 - 이민청 제공 워킹비자 신청서
 - 회사대표 초청장*
 - 회사대표 공식 신분증 원본, 등등..

*초청장에는 채용을 희망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직급, 업무내용, 월급여액, 근무지, 채용희망 기간/연도등을 기재한다.

- 소요기간: 워킹비자 신청 접수 후영사인터뷰 승인번호 (NUT) 가 발급되는데 통상 3~4주 정도 소요 (멕시코시티 이민청 기준)
- 실비: 이민청 납부 수수료/인지세는 무료

3) 영사인터뷰승인번호(NUT) 발급

워킹비자 심의를 거친 후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멕시코영사인터뷰를 신청 할 수 있는 승인번호 (NUT/Numero Único de Tramite) 가 기재된 영사인터뷰승인서가 발급된다. 영사인터뷰승인번호를 이메일로 통지 받은 날로 부터 반드시 워킹데이 30일 내에 전세계 멕시코영사과에서 영사인터뷰를 하고 여권에 임시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4) 영사인터뷰와 임시비자발급

주한멕시코 대사관 영사과의 경우 인터뷰 신청 구비서류와 소요기간은 다음과 같다.

◦구비서류:

1. 인터뷰신청서 (영문 또는 스페인어 대문자로 작성)
2. 여권용 사진 1매
3. 여권 원본과 사본
4. 한국국적자가 아닐 경우, 외국인등록증 원본과 사본
5. 이민청으로부터 받는 영사인터뷰승인서 (NUT)
6. 수수료 (36달러에 해당하는 원화, 현금지불)

*더 자세한 내용은 주한멕시코대사관 홈페이지 와 인터뷰예약관련 이메일을 참고요함

-홈페이지: <http://embamex.sre.gob.mx/corea/>

-인터뷰 예약신청 이메일: consularesembcor@sre.gob.mx

◦소요기간: 영사 인터뷰를 마치면 통상 2~10일내 임시 워킹비자 발급하여 여권에 부착해주는 방식으로 비자를 발급한다.

멕시코에서 급여를 수령하고 일을 할수 있는 비자는 180일이상 4년 이하 워킹비자 (Residencia Temporal, en caso de oferta de empleo) 형식으로 비자를 발급받는다. 인터뷰 시 해당 영사과 영사마다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질문하는 예상질문은 다음과 같다.

◦예상질문:

-회사 명

-회사 주소

-회사 주요사업 목적

-초청장을 발급한 현재 회사대표 이름

-회사 내 직급 및 업무내용

-월 급여액 (페소)

-급여지급 주체 (초청장 발급회사)

-취업하게 된 배경, 등등..

5) 멕시코 입국 후 카드비자 교환

멕시코 입국 후 30일내로 멕시코이민청에 외국인등록을 하여 카드비자 발급 신청절차를 밟아야 한다. 구비서류와 소요기간은 다음과 같다.

◦ 준비서류:

-이민청 제공 카드비자 발급 신청서

-신청자 여권원본

-입국비자원본

-신청자 주거지 증명용 최근 최근 공과금 고지서 사본

-1년 카드비자 발급료 납부 영수증,등등..

◦ 소요기간: 워킹비자 신청 접수 후영사인터뷰 승인번호 (NUT) 가 발급되는데 통상 3~4주 정도 소요 (멕시코시티 이민청 기준)

◦ 실비: 이민청 납부 수수료/인지세

-1년 워킹비자 카드 발급료 =>\$3,961페소

□ 취업비자 신청 절차별 유의사항

◦ 비자신청 시 유의사항

취업비자는 채용을 희망하는 회사가 멕시코이민청에 신청한다. 취업비자 신청 시 초청장에 외국인의 이력, 경력 및 자격증 취득 여부등 상세히 설명하여 반드시 회사에 필요한 인력이라는 점을 부각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민청에 고용주등록증을 발급받은 회사는 매년 이민청에 고용주등록증을 갱신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고용주등록증은 연단위로 갱신해야한다. 통상 3월 말 전년도 세금결산신고가 이루어 지고 난 이후 4~5월에 세금신고 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주등록증을 갱신한다. 이 부분이 누락될 경우 워킹비자 승인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

◦ 멕시코 영사 인터뷰 시 유의사항

영사인터뷰는 대부분 영어나 스페인어로 진행된다. 생각많은 까라롭게 많은 질문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인터뷰 예상질문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해야한다. 인터뷰 시 멕시코현지업체 채용회사가 이민청에 제출한 초청장 내용과 인터뷰 시 취업희망자가 답변한 내용이 너무 상이하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영사는 멕시코이민청으로 이런 인터뷰 내용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통보한다. 비자발급에대해 다시 재고 할 것을 권유한다. 즉 임시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는다. 혹시나 멕시코에 방문 및 체류했던 적이 있었는지 물어볼 경우 반드시 관광이나 비즈니스 차 방문을 했지, 절대 초청장을 발급한 멕시코 회사에서 다른 목적의 체류기간 중 일을 했었다고 대답하면 안되니 주의를 요한다. 인터뷰 시 회사 면접을 보기위해 그리고 장기 체류할 멕시코 생활은 어떤지 궁금하여 멕시코를 방문했다고 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

◦ 멕시코 입국 시 유의사항

영사 인터뷰 이후 임시비자를 받고 멕시코 입국 시 다음과 같은 입국시 절차에 주의해야한다. 입국목적이 멕시코에 입국하여 비자를 받고 일을 하기위해 체류하러 왔다고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관광이나 비즈니스 방문비자로 일시적으로 체류하러 왔다고 하거나 입국비자양식에 표기해서는 안된다. 멕시코 이민청 직원에게 영사인터뷰 후 여권에 부착한 비자를 보여 주어야 한다. 입국비자양식(FMM) 기재란에 보면 7. 입국목적 PURPOSE OF TRIP 란 OTHER 란에 표기 후 이민청 입국 심사관에게 비자교환(CANJE DE DOCUMENTO) 라고 설명해야 한다. 그러면 이민국 직원이 CANJE 라는 란에 표기하고 30일 체류기간을 적어 준 입국비자를 발급한다.

참로로 멕시코는 워킹홀리데이비자 즉 여행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관광취업비자는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멕시코에서 학생비자를 취득한 자가 학업을 마치고 현지에서 취업을 할 경우 바로 취업비자로 전환이 어렵다. 학생비자를 반납하고 일반적인 취업비자 취득절차를 거쳐 비자를 받아야 한다. 즉 해외 멕시코 영사과에서 영사인터뷰를 마치고 임시비자를 받아야 취업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 취업비자 연장/갱신 및 유의사항

취업비자는 비자만기일 30일 전에 이민청에 갱신신청을 할 수 있다. 즉 30일 전에는 신청 할 수 없다. 비자연장 신청 준비서류, 소요기간 및 실비용은 다음과 같다.

◦ 준비서류:

- 이민청 제공 비자갱신 신청서
- 신청자 여권 및 카드비자 원본
- 주거지 주소지 증명서 최근 공과금 고지서 원본
- 재직증명서 및 인사담당자 공식 신분증 원본
- 3년 워킹비자 발급수수료 납부 영수증 원본
- 등등..

◦ 진행절차: 신청접수 (신청일)->심의->갱신승인->이민국 출두 카드비자 발급서류 서명 및 지문날인->갱신된 카드비자발급

◦ 실비: 이민청 납부 수수료/인지대

*연장기간에 따라 수수료는 상이하다.

-1년 갱신수수료: \$3,961페소

-2년 갱신수수료: \$5,936페소

-3년 갱신수수료: \$7,518페소

-4년 갱신수수료: \$8,910페소

◦ 소요기간: 비자갱신 신청 후 갱신된 카드비자를 발급받는데 통상 1~2주 소요 (멕시코시티 이민청기준)

만약 비자 만기일 전에 해외에 체류하다가 비자 만기일 전에 멕시코에 입국하여 워킹비자갱신 신청을 할 수 없었다면 만기일 이후 50일 내 멕시코에 입국하여 입국일로 부터 5일내 비자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 본 사유로 벌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만약 비자 갱신 중 부득히 멕시코를 출국해야 할 경우 출입국허가제도 (Permiso de salida y regreso del pais)를 활용할 수 있다. 출입국 허가서를 취득하는데 제출서류 및 소요기간은 다음과 같다.

◦ 준비서류:

-이민청 제공 출입국허가 신청서

-증명사진 2매

-신청자 여권원본 및 현재 진행중인 비자절차 증명서 사본

-왕복비행기 예약증명서

-출입국허가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원본, 등등..

- 실비: 이민청 납부 수수료/인지대: \$405페소
- 소요기간: 출입국허가신청 후 허가서를 발급받는데 통상 5일 소요 (멕시코시티 이민청기준)

출입국 허가서를 받고 출국 및 입국이 가능하다. 출국 후 반드시 60일 이내 멕시코에 돌아와 10일 내 출입국 허가서를 반납하고 남은 비자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3. 취업비자 취득 시 애로사항 및 대응방안

□ 취업비자 취득 시 주요 애로사항 및 대응방안

멕시코 현지업체에 채용이 확정되어 취업비자 수속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앞서 비자 신청 및 취득절차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그 절차도 복잡하고 소요기간이 많이 걸려 취업비자를 받고 멕시코에 입국하는데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일 것이다. 채용을 희망하는 멕시코 회사가 이민청에 고용주등록이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이거나 매년 갱신해야하는데 갱신된 고용주등록증이 없을 경우는 준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나마 멕시코시티는 취업비자 취득하는데 소요기간이 적게 걸리는 편이다. 만약 취업하는 곳이 몬테레이, 띠후아나 혹은 께레따로와 같은 지방일 경우 취업비자를 취득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멕시코시티의 2배 이상 소요되고 있기에 그 어려움이 더 하다.

현실적으로 취업비자 취득에 많이 시간이 소요되어 일부회사에서는 사전에 취업비자 수속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이 급하다 하여 관광비자나 단기 비즈니스 방문비자 성격으로 멕시코에 입국해 일을 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워킹비자 없이 일을 하는 것임으로 이민법 위반으로 불법이 되고 이민청 실사 시 추방사유가 되어 실제 추방이 되는 사례가 있다. 또한 이 경우 취업비자 없이 근무 중 근무지내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나 개인 모두에게 큰 문제가 되니 주의를 요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비자가 없으면 사회보장청에 가입이 안되어 산재에 대해 보호를 못받는다. 또한 취업비자가 없으면 운전면허증 발급도 어렵고 정상적인 급여도 수령이 어렵다.

그럼으로 취업비자를 취득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법적으로 비자를 취득한 상태에서 멕시코에서 일을 시작해야 한다. 비자관련 전문변호사나 경험많은 대행인을 통해 진행하기를 권유한다.